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 70 호 2015. 7.22(수)

공 고

-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14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공고 제2015 - 913호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평가 규정과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술용역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대로 수정
- 나.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위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이 속한 용역심의 배제
- 다. 위원회 주요 심의기능 확대(안 제4조)
 - 용역결과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라.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용역실명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용역발주부서 실·과장, 담당, 주무관 실명 공개
- 마. 학술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 용역완료후 3개월이내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위원회에 제출 의무화
- 바. 학술용역 결과 공개를 통한 사후 관리 규정 신설(안 제4조의4)
- 용역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3.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1일까지 의견을 남원시장(참조: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기획실
 -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2)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실(☎063-620-60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를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2조 제3호 중 “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을 “ “종합기술용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통신·전기”를 “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 중 “호선한다.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과”를 “위원은”으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을 “위촉직”으로 하고, “있다. 있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용역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 결과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용역실명제 등)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으로 하며,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실·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3(학술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 결과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의4(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학술용역 완료 후 용역 결과물을 남원시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국·도비”를 “국비·도비”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소집하고자 할”을 “소집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 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중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원은 예산의 범위”로, “조례」가 정하는 바”를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를 “심의 업무에 관한 위원 및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u>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u>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뜻은 -----.</p> <p>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p>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 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통신·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총무국장,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

-----.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
-----.

5. <삭 제>

제3조(구성) ①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3. (생략)
-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신설>

② (생략)

<신설>

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 4. 용역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5. 용역 결과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용역실명제 등) ① 용역 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으로 하며,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실·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4조의3(학술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 결과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학술용역 완료 후 용역 결과물을 남원시 홈페이지나

제5조(심의시기)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용역비에 계상되지 않는 공사설계 등의 용역,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계상 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심의시기) -----
----- . -----

-----국비·도비 -----

----- .

제7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집할 -----

-----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매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 등) ① -----
-----1
명 -----.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회의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
-----.

제11조(수당 및 여비) -----
-----위원
은 예산의 범위 -----

-----「조례」 -----
-----.

제12조(비밀엄수) -----심의 업무에 관한 위원 및 그 밖에 -----
-----.

제13조(시행규칙) -----시행에 -----
-----.

입 법 예 고

남원시 공고 제 2015-785호

「남원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7월 2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문화예술진흥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마.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바. 문화예술진흥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사. 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불입 의견 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07),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장미선 (전화 : 620-61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8.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마.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바. 문화예술진흥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사. 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7. . ~ 2015. 8.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중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남원시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통문화예술”이란 제1호의 문화예술 중에서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4.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남원시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

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2. 문화예술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활동
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7.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시책
8.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한국예총 남원지회 지원·육성
10. 남원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 및 생활문화 활동 사업
11.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 문화예술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9조(설치)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남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내
2.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위원직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의 예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9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영

제2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2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조성은 별표의 기금조성계획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2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발전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한다.

③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25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자금지원) ① 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계획)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각 문화예술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2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은 제27조의 사업계획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관리상황 보고) 위원장은 매년 12월 중 해당 연도의 기금관리상황을 결산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기금관리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제31조(기금의 존속기간)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위원회는 제9조의 위원회로 한다.

제4장 보칙

제3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기 금 조 성 계 획(제21조 관련)

(단위 : 백만원)

기 간	기 금 액	비 고
1995 ~ 2004	1,000	이자수익금 포함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